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572호 2009. 9. 23.

규 칙

제589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공 고

제2009-754호 맛숨씨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기본계획 열람 공고 8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규 칙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변경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회계책임 관련 규정을 재무회계 규칙에 신설하여 회계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회계책임에 대한 경각심 확대(안 제2조제10호)
- 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음을 명문화(안 제2조제11호)
- 다. 일상경비 지급대상 중 소모품의 매입·제조, 물품의 수리·운반 등의 1건당 금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23조제2항)
- 라. 「서울특별시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가 2009.7.31. 폐지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에 신설함(안 제180조부터 안 제187조까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11. 제10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 및 용역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감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를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는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감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로 한다.

제10장 “보칙”을 제11장 “보칙”으로 하고,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80조를 제188조로 하고, 제181조를 제189조로 하고, 제182조를 제190조로 하고, 제183조를 제191조로 하고, 제184조를 제192조로 하고, 제180조부터 제18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0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18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하며, 보건소·동 및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82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부터의 보험계약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83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1천만원 이상

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같음한다.

제184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82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6조(보험료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제18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 확보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정보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83조의 신설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재정보증보험계약 및 재정보증보험의 갱신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공 유 재 산 조 서

(단위 : 천원)

종별	적 요	구 분	전전년도말현재		전년도말추정		해당년도말추정		비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행정 재산	본 청	토 지							
		건 물							
	○○관서	토 지							
		건 물							
		○ ○							
	○○관서								
	○○관서								
	계								
일 반 재 산	토 지								
	건 물								
	○ ○								
총 계	토 지								
	건 물								
	○ ○								
	○ ○								
	○ ○								
	계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754호

맛솜씨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기본계획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 지원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5조에 따라 『디자인 서울거리 3차 사업(시장방침)』 중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기본계획』을 해당구역 주민들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사업의 목적

맛솜씨길을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디자인서울 거리 3차조성 사업』과 연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무질서한 간판을 개성있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명칭 : 맛솜씨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나. 사업 구간 : 중랑구 망우본동 맛솜씨길(465m)

- 북측 490-13 ~ 486-10

- 남측 494-1 ~ 466-1

다. 사업 기간 : 2009년 9월 ~ 2010년 9월

라. 추진방법 : 사업지구 내 주민자율협정제 추진(간판개선 주민위원회)

마. 사업비 지원 : 1업소 당 3,000천원 예정

바. 간판설치 시 가이드라인 적용(중랑구고시 2008-14호)

3. 의견제출

가. 열람 기간 : 공고일 및 중랑구청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15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열람기간 중

다.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참조)에게 제출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디자인과(전화 : 490-384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